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5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2(자문기관의 설치 등)제2항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조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성 확보(안 제2조)

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안 제3조)

나.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 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5. 30. ~ 2019. 6. 19.(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7.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11조에 따라”를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u>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u> -----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 설치) ----- ----- ----- ----- <u>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삭 제>

<삭 제>

<삭 제>

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은영(☎ 3153-8594)